

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공고

‘창업하기 좋은 도시’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4년 07월 30일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

센터개요

【 판교역 창업카페 】

구 분	개방형
설립일	2021. 7월
위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11, 판교역 B1 알파지하광장, 성남창업센터(정글ON)
면적(전용)	187㎡ (57평)
공간구성	업무공간, 회의실, 북카페, 스터디룸
이용시간	업무공간, 회의실 : 월 ~ 금 (09시 ~ 21시) 북카페 : 월 ~ 일(08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센터 이용 불가 ※ 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센터전경	

【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 】

구 분	개방형
설립일	2022. 3월
위치	성남시 수정구 달래대로 46(시흥동),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, 성남창업센터(정글ON)
면적(전용)	350m ² (106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오픈형 입주공간 및 편의시설(미팅룸, 정수기, 복사기 등)
이용시간	월 ~ 금(09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 ※ 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센터전경	 

2

모집개요

□ 모집대상

센터명	신청자격	
	대 상	분야
판교역 창업카페	• 창업 3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	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
성남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	• 창업 5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	

*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, 제조시설 입주 불가

□ 모집규모 : 총 7개사 내외

센터명	개방형
판교역 창업카페	5개사 내외 (1~2인석)
성남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	3개사 내외 (1~4인석)

* 센터별 중복 신청 불가 (택1)

**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(개방형)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**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**

***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□ 모집기간 : ~ 2024. 8. 12(월), 오전 11시 까지

※ 유의사항
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이전에 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 비 창업자	▶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※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(공고일 기준) • 판교역 창업카페 : 창업 3년 이내 기업 • 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 : 창업 5년 이내 기업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▶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	
지 원 “제외”대상	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(기업) ▶ 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구 분	내 용		
입주 기간	센터명	입주기간	비고
	판교역 창업카페	2024. 9. 1 ~ 2025. 2. 28 (6개월)	
	성남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	2024. 9. 1 ~ 2025. 8. 31 (1년)	
	※ 입주 연장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가능 • 판교역 창업카페 : 6개월 •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: 1년 ※ 진흥원 운영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(투자, 고용 등)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		
입주 비	센터명	입주관리비(보증금)	멤버십비(사용료)
	판교역 창업카페	좌석당 20만원	좌석당 5만원/월
	글로벌융합센터 코워킹스페이스	좌석당 20만원	좌석당 5만원/월
	※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※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• 예시1 (판교역 카페/ 1인석) 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1인 = 20만원(이행보증보험) - 멤버십비 : 5만원 × 1인 × 6개월 = 30만원 • 예시2 (코워킹/4인석) 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4인 = 80만원(이행보증보험) - 멤버십비 : 5만원 × 4인 × 12개월 = 120만원		
기 타	○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 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 • 행위제한 및 퇴소 •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등록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		

4

선정절차 및 방법

- 서류평가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발표평가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평가기준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성장전략 등
- 결과통보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
□ **접수 및 선정절차**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'24. 7월 5주 ~ 8월 1주차	· 진흥원 홈페이지 등
접 수	공고일 ~ '24. 8. 12, 11시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~ '24. 8월 3주차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'24. 8월 4주차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'24. 8월 4주차	· 이메일 결과안내(선정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'24. 8월 5주차 *입주 '24. 9월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-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타당성 등
-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- **가점사항**

- ①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 - ② 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
 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 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 보증·용자 제외
 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 보증·용자 제외

- * ①~②는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- ** 증빙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협약서, 투자계약서 등) 미제출시 미인정
- *** 서류평가지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☐ **접수마감** : ~ 2024. 8. 12(월), 오전 11:00 까지
- ☐ **접수방법**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- 하단 표의 “제출서류”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☐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명원		○	○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×	×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 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	○	○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(인터넷등기소) <http://www.iros.go.kr/>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
 - 국 세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지방세 : (정부24) <https://www.gov.kr>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<https://www.4insure.or.kr>
- 사실증명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-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
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
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문 의 처** : 성남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부

구 분	담 당 자	연 락 처
모집·선정	한은솔 대리	☎ 031-782-3042
시설·공간	김은비 주임	☎ 031-786-0081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	창업여부	해당기업명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	
		이종	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	창업아님		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 승계	
		이종창업	-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	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	
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	
	이종		창 업		
기타	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			창업아님	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					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					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					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					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					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